

가정법원에서의 면회 교류 사건 수속에 대하여



면회 교류란?

별거 중이거나 이혼 후에
떨어져 사는 부모와 자녀가
정기적·계속적으로 교류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법원의 수속을 이용하여 면회 교류
방법과 내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책자에서는 면회 교류에 대해 논의할
때 부모가 유의해야 할 점과 가정법원
면회 교류 사건 수속의 흐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면회 교류에 대해 논의하시는 분에게

자녀에게 면회 교류란?

부부가 떨어져 살게 되더라도 자녀가 양쪽 부모로부터 모두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각각의 부모와 따뜻하고 안정된 부모자녀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은 자녀의 성장에 아주 중요합니다.

적절한 형태로 면회 교류가 이루어지면 자녀는 양쪽 부모로부터 모두 사랑받으며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안도감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유의해야 할 점

- 자녀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 ▶ 자녀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생각, 자녀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상상하고, 자녀에게 가장 바람직한 면회 교류의 모습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녀를 부모의 다툼에 끌어들이지 않도록 합니다.
 - ▶ 자녀로서 다른 한쪽 부모의 험담을 듣거나 부모가 다투는 모습을 보고 듣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원하는 사람들로서 다른 한쪽 부모와 협력하도록 합니다.
 - ▶ 부부 간의 일과 부모자녀의 일은 분리해서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생각을 상상하여 자녀의 부모로서 서로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자신의 마음을 직시해 봅시다.
 - ▶ 다투고 있을 때는 평소와 달리 차분하게 생각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의 기회도 이용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돌아보고 정리해 봅시다.



법원 웹사이트(동영상 제공)

<http://www.courts.go.jp/video/>

이혼이나 면회 교류를 둘러싼 부모의 다툼에서 자녀가 받는 영향이나 부모가 자녀를 다툼에 끌어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배려 등에 대해 설명한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꼭 한번 시청해 보십시오.▶



裁判所 動画配信

검색

※음성 및 자막은 일본어로 되어 있습니다.



～離婚をめぐる争いから
子どもを守るために～



～子どもにとって望ましい
話し合いとなるために～





면회 교류 사건 수속의 흐름



법원의 수속

별거 중 또는 이혼 후

- 면회 교류에 대해 부모에 의한 논의의 결론이 나지 않거나 논의가 불가능하다
- 자녀의 생활 상황 변화 등으로 인해 일단 정한 면회 교류 방법을 변경하고 싶다

이러한 경우, 가정법원의 수속을 이용하여 면회 교류에 관해 정할 수가 있습니다.

조정 신청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아버지 또는 어머니
- * 신청 장소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신청서 등의 지참 또는 우송

- * 심판 청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원의 판단으로 조정에 부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이혼·조정 중에도 면회 교류에 대해 논의하거나 정할 수 있습니다.

- ▶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법원 웹사이트(면회 교류 조정)으로 (P 6)

조정

- 조정의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 사안에 따라 여러 차례의 기일을 설정합니다. 기일의 간격은 통상 1개월 정도입니다.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단기간에 다음 기일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1회의 기일은 2시간 정도입니다.
- * 원칙적으로 판사 1명과 조정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가 진행합니다. 가정법원 조사관이 기일에 입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Q&A 로 (P 5)

조정의 성립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고 그 내용을 조정 조서에 기재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조정의 불성립·심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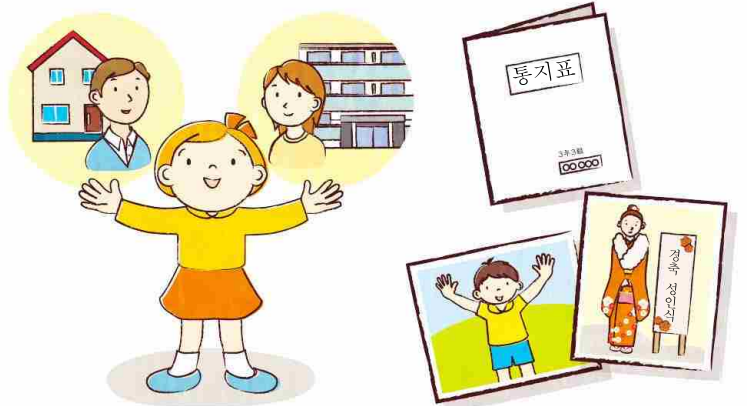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판단으로 조정은 불성립이 되고, 자동적으로 심판 수속으로 이행합니다.

심판에서는 판사가 모든 사정을 바탕으로 자녀의 이익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가정법원 조사관에 의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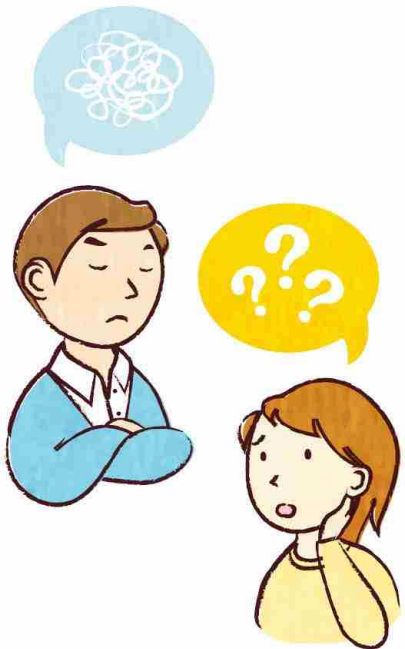
- 판사의 판단으로 가정법원 조사관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Q&A 로 (P 5)

- 조정 조서 또는 심판에서 정해진 내용으로 실시합니다.
면회 교류 방법은 크게 나누어 아래의 2가지가 있습니다.
- * 직접 교류
부모와 자녀가 직접 만나 교류하는 것입니다. 빈도, 면회 시간, 면회(인도) 장소, 동반자 유무 등을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간접 교류
전화, 편지, 메일, 영상 전화 등의 방법에 의한 교류와,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로부터 떨어져 사는 부모에게 사진이나 통지표 등을 송부하는 교류 등이 있습니다.
- 면회 교류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나 심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회 교류 지원 기관을 이용하는 합의도 가능합니다.

- 부모가 협력해서 자녀를 주고받거나 연락을 취하기가 어려운 경우, 면회 교류 지원 기관을 이용하는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법원이 면회 교류 지원 기관을 알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용 조건이나 비용 등은 직접 각 기관으로 문의하십시오.



면회 교류 조정에 관한 Q&A



Q2 면회 교류의 내용이나 방법은 어떻게 정하게 되나요?

A 면회 교류가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 자녀의 복지에 적합하도록 자녀의 연령, 성격, 생활 상황, 생활 환경, 자녀의 생각, 지금까지의 부모자녀 간 관계 등을 고려하여 자녀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내용과 방법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법원에서는 자녀의 상황과 부모자녀의 관계, 부모의 면회 교류에 대한 생각 등에 대해 듣는 외에, 필요에 따라 조언이나 제언을 합니다.

Q4 면회 교류의 내용 및 방법을 정한 후 잘 실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조정에서 합의한 내용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 권고 수속을 진행하거나 조정 등을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사정이 변경되는 등 조정에서 정한 내용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도 조정을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다툼에 자녀를 자꾸 끌어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선은 당초의 조정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계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 조정의 자리에서는 어떤 사항을 논의하는가요?

A 떨어져 사는 부모와 자녀가 면회 교류를 할지 여부와, 면회 교류를 하는 방향으로 논의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 일시, 장소 등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자녀의 이익을 고려하여 논의합니다.

Q3 가정법원 조사관은 어떤 일을 하나요?

A 가정법원 조사관은 심리학 등 행동과학의 식견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조사나 조율을 진행합니다. 면회 교류를 할지 여부를 포함하여 자녀에게 보다 나은 면회 교류의 내용과 방법을 생각하기 위해 자녀와 면접하여 그 생각을 듣고 그것을 조정위원회나 부모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태도나 부모자녀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법원 내에서 시행적으로 면회 교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 웹사이트(면회 교류 조정)

http://www.courts.go.jp/saiban/syurui_kazi/kazi_07_08/index.html

면회 교류 조정 수속에 관한 안내 및 신청서와 그 기입 예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裁判所 面会交流

검색



일본사법지원센터 법 테라스 안내 법적 문제로 고민될 때는

0570-078374

<https://www.houterasu.or.jp>

法テラス

검색



MEMO

- 민법에서는 이혼할 때 면회 교류나 양육비 등에 대해 정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민법 제 766 호)
- 가사사건수속법에서는 조정이나 심판을 할 때 자녀의 복지(자녀의 의사 등)를 배려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사사건수속법 제 65 조 외)